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2나718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 판 경 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2나718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19가단5064323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유주

변 론 종 결 2024. 4. 12.

판 결 선 고 2024. 5. 17.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19가단506432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 3항은 당심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8. 11. 9. 접수 제522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당심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 법원에 제출된 피고의 주장과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 중 주문 제2, 3항은 당심

법원에서 한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용두, 판사 최성수, 판사 임은하